

---

# 방사선 과학기술 및 산업진흥 유공 포상 후보자 공모 계획(안)

---

2026. 7.



**한국방사선진흥협회**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

# I. 추진목적

## □ 목 적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 기술혁신, 산업육성, 국민건강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노고와 업적을 치하하고,
- 방사선 분야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방사선 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를 위해 추진

# II. 포상 후보자 공모

## □ 포상 개요

- (포상 종류 및 규모)
  - (개인) 개인의 공적에 의한 포상
  - (단체) 기관(단체) 전체 공적에 의한 포상

구 분	포상 종류	규모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단 체	3점	10점
	개 인	7점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협회장 표창	단 체	1점	6점
	개 인	5점	

\* 협회장 표창 규모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표창시기) KARA 2026 Annual Meeting

\* (일정) 2026년 11월 12일(목), (장소) 한국방사선진흥협회(서울시 성동구 소재)

### Ⅲ. 추천 대상 및 제한사항

#### □ 추천 대상(공적 분야)

- **(기술혁신)** 원천기술 개발, 성숙기술 고도화, 미래형 방사선 기술 개발 등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 **(산업육성)** 방사선 산업육성·이용 증진, 정책·R&D 기획, 규제·제도 개선,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전문인력양성 등에 기여한 자
- **(국민건강증진)** 방사선 진단·치료기술 개발, 방사성의약품 개발 및 기술 고도화, 방사선의학 실용화 등에 기여한 자
- **(국민생활안전)** 대기·해양 환경, 보안, 검사 등 방사선 기술 개발 및 고도화(실용화), 방호 기술, 안전관리 개선 등에 기여한 자
- **(인프라활성화)** 시설/장비 구축 및 이용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등 인프라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자
- 기타 방사선 이용·진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 추천 기준

기 준		주요 내용
일반기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선 관련 분야에서 종사하고 구체적·객관적 공적이 입증된 자</li> <li>* 산업체, 연구기관, 정부·지자체, 대학, 협회, 재단, 학회, 국제기구·단체 포함</li> </ul>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사선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자</li> <li>· 방사선 과학기술 발전 등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li> </ul>
자격기준 ※ 추천 마감일 기준	단체	· 방사선 관련 분야 2년 이상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단체
	개인	· 방사선 관련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 □ 추천 제한

### ○ 공무원/일반국민 및 단체

#### 가. 단체표창

- 표창(정부 및 협회장)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 \* 단체표창은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해야 수상 가능

#### 나. 개인표창

- 표창(정부 및 협회장)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의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다. 공통사항

-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표창수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포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 아래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붙임 1]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고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주	

\*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참조

## □ 기타 사항

### ○ (공적기간) 기간의 산정은 포상(정부 표창, 협회장상)을 받은 날 이후부터 후보자 접수 마감일까지로 기재

\* 포상을 받은 자(단체)의 경우에 해당하며, 없는 경우 방사선 분야 근무경력 기재

## IV. 심사 기준 및 심사 절차

---

### □ 심사 기준

- ① 추천 서류의 적격성 및 공적내용 확인
- ② 공적기간 중 기여도(포상 등급별 후보자 추천 기준)
- ③ 방사선 분야 근무경력 및 맡은 바 직무에 대한 사명감
- ④ 방사선 이용·진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한 구체적인 공적의 내용
- ⑤ 후보자가 수행한 업무의 중요도
- ⑥ 기타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기준
  - \*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만족도, 창조적 기여도, 공적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창조도 등

### □ 심사 절차

- (부총리 겸 장관 표창)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 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정
- (협회장 표창)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후 선정

## V. 제출서류

### □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서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공 포상 추천 대상자 현황</li> <li>* "서식 1"은 스캔없이 엑셀 파일로 제출 요망</li> </ul>	서식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조서</li> <li>* (개인) 조사자 :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li> <li>(단체) 조사자 :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li> </ul>	(개인) 서식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li> </ul>	(단체) 서식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인의 경우) 이력서</li> </ul>	서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li> </ul>	서식 4-1
한국방사선 진흥협회장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회장표창 추천서</li> </ul>	서식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조서</li> <li>* (개인) 조사자 :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li> <li>(단체) 조사자 :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li> </ul>	(개인) 서식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력서</li> </ul>	(단체) 서식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경우) 협회장표창에 대한 동의서</li> </ul>	서식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체의 경우) 협회장표창에 대한 동의서</li> </ul>	서식 4-1
		서식 4-2

#### 공적조서 작성요령

- 추천훈격란은 추천하는 포상훈격에 따라 장관표창, 협회장 표창으로 기재
  - 조사자는 소속부서장 또는 인사부서장 또는 임원으로 기재
  - 공적요지는 향후 「수여증명서」등 발급시 기재되는 사항으로 추천후보자의 주된 공적내용을 개조식으로 압축하여 작성
  - 공적내용은 추천후보자의 전 공적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되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계량적으로 기술(2,000자 이상)
  - 공적기간은 원자력 및 방사선 전 기간을 합산하되 추천 마감일('26.08.31.)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동일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이후 기간으로 작성
  - 추천 순위란은 기재하지 말 것
  - 주요경력란에 기간과 과거 포상기록란의 포상일자 연월일 표기를 정확히 기재
- ※ 과거 포상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

## VI. 행정사항

---

### □ 접수 정보

- 제출기한 : 2026년 8월 31일(월) **자정**까지  
\* 이메일 제출 시점이 9월 1일 00시 00분인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됨
- 접 수 처 : posang@ri.or.kr
- 문 의 처 : 대외협력실 ☎02-3490-7132, hsk@ri.or.kr

### □ 후보자 추천시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 포상 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기타 추천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천하여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님
-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게는 범죄 경력조회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인적사항과 주요공적이 공개됨을 사전에 동의받아야 함  
\*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추후 포상대상자로 결정된 후 수여를 포기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됨을 함께 고지
- 추천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식은 PDF 및 한글, 엑셀 모두 제출
-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기준 적용

붙 임 : 제한사유 조회방법

별 첨 : 장관 및 협회장표창 후보자 추천 서식

◆ 장관표창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

※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해야 함

①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44-202-7693)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044 - 200 - 4127)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37)

② 아래의 방법(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확인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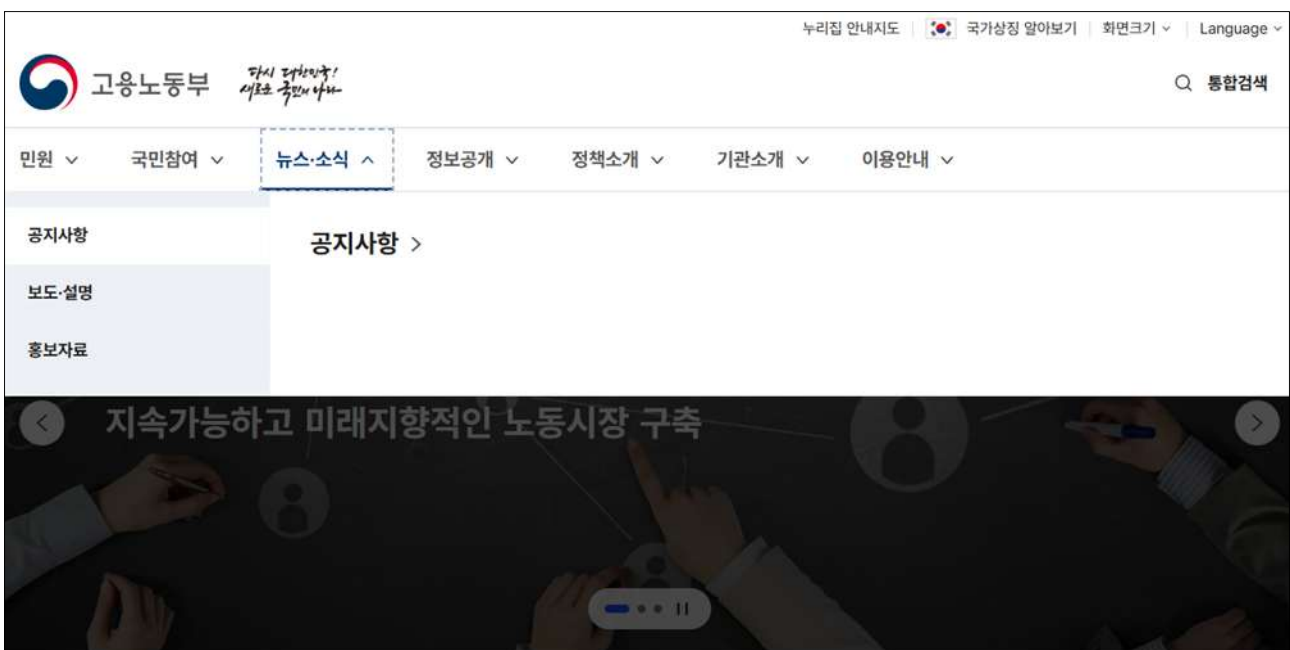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 동 시행령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홈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공고    행사    입찰    인사    포상대상자공개    기타

전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전체 12    10건 보기    보기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	등록일	조회
12	[공고] 2024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4.12.23	4,570
11	[공고]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3.12.29	9,011
10	[공고]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3.02.07	9,331
9	[공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	2021.12.29	12,014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법위반사실 조회 :

<https://case.ftc.go.kr/ocp/co/violtLaw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the KFTC logo, the slogan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주인이 나와' (Korea, Korea! A new owner has emerged), and a search bar.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are several menu items: '소식·뉴스', '정책·제도', '정보공개', '심결·법령', '민원·참여', '해외경쟁정책', and '기관소개'. The '심결·법령' menu is highlighted with a blue box. A dropdown menu is visible under '심결·법령', listing items such as '위원회소관법령', '의결서·재결서', '심사관전결결고서', '심의속기록', '법위반사실조회', and '법위반조치발급'. Below the menu, there is a '자세히 보러가기' button and a video player. At the bottom, there is a dark blue footer with icons and text for various services: '나의 민원조회', '방문접수예약', '공정위에바란다', '불공정거래신고', '익명제보', '사업자정보공개', '사건진행현황', and '의결서조회'.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ers/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 행정정보공개 +
- 정책실명제 +
- 공공데이터개방
- 청렴정책공개 +
- 예산·법령정보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정보공개 기타 +

홈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명단공개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 ③ “명단공개”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 2024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6.16.~2027.06.15.
- \* 2024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12.30.~2027.12.29.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고액순

전체 ▼

10개씩 ▼

전체 ▼

지역-전: ▼

업종-전체 ▼

검색

전체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전체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
----	----	------	----------	----------	--------